

第115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第2號(附錄)
本會議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目 次

1.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雇傭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1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6面
 3. 2001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 區有財產 管理計劃 變更計劃(案) 審査報告書 13面
 4. 都市計劃 變更決定에 대한 意見聽取 結果報告書 16面

1.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報告書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9월 28일 ·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1년 10월 4일

다. 상정일자 : 제115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1. 10. 12) 시민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 현 식)

가. 개정이유

방법원의 경찰서 파견근무제가 폐지됨에 따라 방법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 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직명 변경으로 인한 직원사기를 양양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방법원파견조항삭제→제5조

○ 직명변경 : 지방방법원 → 지방지도원 - [별표 1] 개정(방법원 → 지도원)

다. 개정근거

○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시달(내무부 지공12101-189, '96. 4. 15)

○ 구청장방침 제1060호(2001. 9. 27)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정 성 수)

가. 개정이유

- 방법원의 경찰서 파견근무제가 폐지되어 시행 중에 있으므로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이들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구청장에게로 조례상 일치되도록 정비하고
- 방법원들이 대부분 단속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에 맞도록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 하고자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지방방법원 경찰서 파견조항 삭제 : 제5조(방법원의 파견)
- 직명 변경 : “별표1”의 지방방법원 → 지방지도원

다. 검토의견

- 1996.4.15 당시 내무부에서 ①지방방법원의 경찰서 파견근무제 폐지 ②지방방법원 직명을 “지방지도원”으로 개칭 ③근무상한연령 상향(58세) 조정 ④신규충원 없이 자동감원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방법원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바 있으며, 서울시의 각 자치구에서는 이중 근무상한연령 상한 조정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를 수용하여 시행하고 있음
- 방법원을 경찰서나 파출소에 파견하게 되면 파견된 방법원의 복무지휘권은 경찰서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있으므로 임용권자인 구청장은 인건비만 부담하면서 인사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현재 방법원의 경찰서 파견제도는 당시 내무부의 표준안 시달시에 사실상 폐지되었으므로 조례 제5조의 방법원의 경찰서 파견조항 삭제는 우리 구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며
- 방법원의 직명 변경은 현재 방법원의 종사업무가 대부분이 주차단속, 전용차로 단속 등 주민들의 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단속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직명이 방법원으로 되어 있어 주민들이 이들을 방법 순찰하는 공무원으로 잘못 인식할 소지가 있으며, 심지어 일부 공무원 중에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들이 종사하는 업무와 직명이 가급적 일치되도록 조정하는 것이므로 수용함이 타당함

라. 참고사항

- 종로구 지방방법원(고용직) 근무현황
 - 인 원 : 120명

○연령별 현황

계	51세이상	46세~50세	45세~41세	40세이하
120명	35명	58명	26명	1명

○담당업무 현황

계	단속업무(주차,청소,가로정비,공원,광고물 등)	청사관리	행정보조
120명	76명	15명	29명

□ 지방방법원 운영 연혁

【 자율방법대원 】

- '53년 11월 : 리·동단위로 야경제 실시(주민자율)
- '62년 5월 : 동단위 자율방법대원제 실시(유급) 운영
- '63년 5월 : 방법위원회 운영요강 제정 시행(치안본부)

【 지방방법원 】

- '87년 12월 : 노태우 대통령후보 선거공약
- '89년 1월 : 재직중인 자율방법대원 공약실천 회의
 - 현직 방법대원을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 파출소 파견근무, 결원보충 금지
- '89년 3월 :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개정(준직) 시달
 - 공무원신분 : 1종 지방고용직(직명:방법원)
 - 근무상한연령 : 53세
 - 인사 및 복무 : 구청장이 임용, 퇴직시 충원금지, 경찰서(파출소) 파견배치 방법활동
- '89년 3월 1일 : 종로구 방법대원 290명 지방고용직으로 임용(전국 7,528명)
- '95년 1월~'97년 7월 : 경찰서에 파견근무중인 방법원 구청으로 복귀
- '97년 11월 5일 : 방법원 직명변경 및 정년연장 조례개정 상정
 - 직명변경 : 지방방법원 → 지방지도원
 - 정년연장 : 정년 53세 → 정년 58세
- '97년 11월 19일 : 종로구의회 본회의에서 표결결과 부결

□ 각 구 고용직 명칭 및 정년변경 현황

구 명	명 칭	인 원	정 년	비 고
종 로 구	방법원	120명	53세	
중 구	지도원	124명	54세	
용 산 구	지도원	113명	57세	
성 동 구	지도원	66명	55세	
광 진 구	지도원	70명	56세	
동대문구	방법원	66명	52세	
중 랑 구	지도원	51명	52세	
성 북 구	지도원	86명	53세	
강 북 구	방법원	26명	53세	
도 봉 구	방법원	14명	53세	
노 원 구	지도원	66명	57세	
은 평 구	지도원	54명	54세	
서대문구	지도원	83명	55세	
마 포 구	지도원	104명	52세	
양 천 구	방법원	38명	53세	
강 서 구	지도원	37명	53세	
구 로 구	지도원	72명	55세	
금 천 구	지도원	61명	52세	
영등포구	지도원	78명	52세	
동 작 구	지도원	98명	52세	
관 악 구	지도원	59명	52세	
서 초 구	지도원	130명	54세	
강 남 구	지도원	87명	52세	
송 파 구	지도원	43명	50세	
강 동 구	지도원	69명	55세	

4. 質疑 및 答辯 要旨 :

(질의자 : 이 동 규 · 위원, 박 종 식 위원, 홍 기 서 위원)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김 현 식, 총무과장 이 동 명)

문) 명칭이 5개구는 '방법원', 20개구는 '지도원'으로 되어있는데 개정이 타구에 비해 이렇게 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지난 '97년 11월에 방법에 대한 명칭변경과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본회의에서 전체(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문) 방법원의 정년이 53세로 되어 있는데, 정년을 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답) 구청장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각 구의 견해가 너무 상이하야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방향에 맞추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 방법원 담당업무를 보면 주차단속에 76명, 청사관리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청사관리 15명은 어디에 배치를 하였습니까? 동에도 파견되었는지요?

답) 청사관리 15명 중 14명은 구청에 배치되어 있고, 세종문화복지센터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청사관리보다는 청사관리 보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정확하다고 하겠습니다.

문) 동청사를 전에 방법원이 관리했었을 때는 관리가 잘 되었는데, 이들이 모두 구로 들어오고 현재 동사무소에는 여직원들이 많아 실제 동청사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방법원을 각 동에 1명씩 총 19명을 동에 재배치하여 동청사를 관리할 수 있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원이 많이 감축되었고, 업무도 증가되어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 數 意 見 的 要 旨 : 없 음

8. 其 他 必 要 한 事 項 : 없 음

2.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9월 28일 ·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1년 10월 4일

다. 상정일자 : 제115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1.10.12) 재무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동 언 호)

가. 개정이유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 공포 (2001. 5. 24 법률 제6473호)되어 비디오물및게임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이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던 것을 자치구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 정보공개 청구인이 A2이상 크기의 카드·도면 등을 1:1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수수료 종목 신설(10종)
- 정보공개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중 카드·도면등 A2이상 사본 수수료 금액을 개정
- A3 이상 : 300원(현행) → A2 이상 : 실비, A3 : 300원(개정)

다. 개정근거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6조
- 행정정보공개제도 개선계획 통보 【서울시 개혁12410-376(2001. 7.11)】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장 소 수)

가. 개정 이유

- 개정안은 2개 사항으로 1개 사항은 상위법 개정으로 시조례에 정하던 사항을 구조례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른 사안이며, 또 1개 사항은 행정 정보자료의 복사 수수료에 있어서 그 규격이 A2(신문지 ½크기) 이상의 사본은 실제비용이 800원에서 2,000원 상당이 소요되에도 수수료 규정에서

는 300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코자 하는 안임

나. 개정골자

< 복사비용 현실화안 >

A3 이상 복사수수료 300원 → A3 : 300원

A2 이상 : 실비

< 법개정에 의한 개정안 >

다음 사항을 수수료조례에 신규 규정코자 함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9)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자 신고·등록신청에 관한 사항			
가)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나) 게임·설비제공업 등록신고 신청	1건	30,000원	
다)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라)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신청	1건	30,000원	
마) 복합유통·제공업 신고신청	1건	10,000원	
(10)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자 신고·등록신청 변경신고			
가)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	10,000원	
나) 게임·설비제공업 등록신고 변경	1건	15,000원	
다)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변경신고	1건	10,000원	
라)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신청 변경신고	1건	15,000원	
마) 복합유통·제공업 신고신청 변경신고	1건	5,000원	

< 현행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 >

○ 전문 8조와 별표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66종의 수수료금액을 규정하고 있음

- ┌ 인감증명 등 제증명수수료 규정 24종
- ├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18종
- └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24종

다. 관련법규

< 금번 조례개정을 가져온 모법규정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6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시·군·구(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노래연습장의 등록신청
2.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신청
3. 위 1, 2호의 변경신고

< 조례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비디오물 : 연속적인 영상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볼 수 있도록 제작된 것
3. 게임물 :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7.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 가. 비디오 감상실
 - 나. 비디오물 소극장
 - 다. 그 밖의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8. 게임제공업 :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영업
 - 가. 청소년게임장업 :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 대상
 - 나. 일반게임장업 : 청소년 및 일반 구분, 설치 가능
9. 복합·유통제공업 : 2종류 이상의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

라. 심의참고자료

< 업소현황 및 수수료 수입예상 >

○게임·비디오물 관련 - 5,950,000원

구 분	등록업소 (2000년말)	예 상 수 입			
		처리건수(예상)		산 출 내 용	수수료액
		신 규	변 경		
노래연습장	245	25	100	(25건x20,000원)+(100건x10,000원)	1,500,000
비디오시청	93	10	20	(10건x20,000원)+(20건x10,000원)	400,000
일반게임장	180	40	70	(40건x30,000원)+(70건x15,000원)	2,250
복합·유통	165	50	20	(50건x30,000원)+(20건x15,000원)	1,800,000

○행정정보 복사수수료 예상액 - 없음

A2(신문용자½) 규격이상의 신청실적이 없었으며, 우리 구에 해당장비도 없음

< 각 구별 수수료 책정현황 및 조례개정 현황 >

(2001.10.8 현재)

(단위:천원)

구 별	등 록 사 항						신고사항		조례 개정 현황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		일반게임장		복합·유통		
	신규	변경	신규	변경	신규	변경	신규	변경	
서울시 (종전)	2	1	20	10	30	15	5	2.5	
종로구	20	10	20	10	30	15	10	5	
중구	20	10	20	10	30	15	5	2.5	완료
용산구	20	10	20	10	30	15	10	5	완료
성동구	20	10	20	10	30	15	20	10	진행중
광진구	20	10	20	10	30	15	20	10	진행중
동대문구	20	10	20	10	30	15	20	10	진행중
중랑구	20	10	20	10	20	10	10	5	완료
성북구	20	10	20	10	20	10	10	5	완료
강북구	20	10	20	10	20	10	10	5	진행중
노원구	20	10	20	10	20	10	10	5	완료
은평구	20	10	20	10	30	15	5	2.5	진행중
서대문구	20	10	20	10	30	15	5	2.5	진행중
마포구	20	10	20	10	20	10	30	15	완료
양천구	5	2.5	20	10	20	10	5	2.5	완료
강서구	5	2.5	20	10	20	10	5	2.5	진행중
구로구	5	2.5	20	10	20	10	5	2.5	진행중
금천구	5	2.5	20	10	30	15	30	15	완료
영등포구	5	2.5	20	10	20	10	5	2.5	완료
동작구	5	2.5	20	10	30	15	5	2.5	완료
관악구	20	10	20	10	30	15	20	10	진행중
도봉구	20	10	20	10	30	15	10	10	완료
서초구	5	2.5	20	10	30	15	5	2.5	진행중
강남구	20	10	20	10	30	15	10	5	완료
송파구	20	10	20	10	30	15	10	5	진행중
강동구	5	2.5	20	10	30	15	5	2.5	진행중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김 복 동 위원, 오 필 근 위원, 오 금 남 위원)

(답변자 : 재무국장 동 연 호)

문) 청소년들이 하는 비디오장이 도박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있는데 비디오장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답) 비디오장 허가 후 건전한 청소년들의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합동으로 해당부서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 우리 관내 청소년 게임장은 몇 개소가 됩니까?

답) 약 170여개소입니다.

문) 청소년 게임장은 어떻게 허가되는 것인가요?

답) 자유업으로 하도록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문) 외부에서 A2크기(신문용지 1/2)의 카드·도면을 복사하면 이에 대한 복사료가 1,700원이 맞습니까?

답) A2크기의 카드·도면은 장당 800원이며, A2를 복사할 수 있는 복사기는 대당 약 1,700만원 정도입니다.

문) 청구인이 용지규격 A2이상 크기의 카드·도면 등을 복사 요구시 외부로 자료를 가지고 가서 복사를 해야 하는데, 보안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답) 정보공개 가능한 자료이므로 문제는 없겠으나 보안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 A2복사기를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 현재는 실수요자가 없고 워낙 고가의 기기라서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5. 討 論 要 旨 : 오 필 근 위원 수정(안) 동의

○ 별표 2의 9항 나호 “게임·설비제공업”을 “일반게임장업”으로 수정동의

6. 審 査 結 果 : 수정가결

○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안)은 원안가결: 수정(안) 별 첨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발의년월일: 2001. 10. 15

발 의 자: 재무건설위원회

1. 수정이유

- 개정(안) 별표2의 9항 나호의 “게임·설비제공업”은 법 제2조에서 청소년게임장업과 일반게임장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중 청소년게임장업은 법 제46조제2항에서 구조레 제정대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일반게임장업만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정함

2. 수정골자

- 별표 2의 9항 나호 “게임·설비제공업”을 “일반게임장업”으로 수정동의

3. 200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審 查 報 告 書

1. 審查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9월 28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1년 10월 4일
- 다. 상정일자 : 제115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1. 10. 12) 재무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동 연 호)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구민생활관에 인접한 부지를 공공성확보를 위하여 구에서 매입

다.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장 소 수)

가. 변경신청사유

- 혜화동 소재 구민생활관과 접한 개인소유 임야를 형질변경하여 개발코자 하고 있어 이럴 경우 구민생활관의 공공성과 쾌적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이 부지를 매입코자 함

나.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현황

- 당초 : 토지매입 3건
 - 교남동청사 부지 : 행촌동 180-10 외 5필지 176.4평

- 종로5·6가동청사 부지 : 효제동 173-2 외 4필지 176평
- 이화동청사 부지 : 이화동 149-1 150.2평
- 변경신청 : 없었음

다. 금회 변경신청 대상부지

- 위 치 : 혜화동 1-23
- 면 적 : 171.2㎡ (51.9평)
- 지 목 : 임야
- 용도지구 : 일반주거지역
- 주변여건 및 입지형태 : 12m 도로인 우암로 (구민생활관 → 과학고,경신고 → 성북동) 좌변의 구민생활관과 과학고,삼각점에 위치한 나대지로서 우암로와 단차가4~7m가 되는 삼각형 토지임

라. 부지매입추진 경과

- 1991.11.30 : 서울올림픽 성공적 개최기념 올림픽기념관 건립
- 1997. 1.21 : 혜화동 1-23번지 분할(모번지:혜화동 1-13번지)
- 1998. 1. 7 : 구민회관 위탁운영(체육진흥공단→종로구)
- 2000. 7.26 : 현소유자 토지매입(전 소유주:학교법인 고계학원)
- 2001. 3. : 건축물 설계 계약(지하2층 지상5층 근린생활 및 다세대)
- 2001. 4.30 : 토지형질변경 신청
- 2001. 5.10 : 구 도시계획위원회 보류(무단형질변경 소명)
- 2001. 6.26 : 토지형질변경 신청(2차)
- 2001. 6.29 :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차) - 부지매입 검토
- 2001. 7. 4 : 토지소유자에게 신청토지 매도의사 타진
- 2001. 7. 7 : 조건부 매도동의(적정가 및 조기매입)
- 2001. 7.30 : 매입부지 감정평가(평균 227,696,000원) - 공시지가 190,097,000원
 - ┌ 동야감정평가법인 : 230,777,000원
 - └ 미래감정평가법인 : 224,614,400원
- 2001. 9.27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매입 승인)

마. 2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시 토지매입 검토 발언록

- 본 토지는 도로와 5m의 단차를 이루고 도로와 접한 부분에는 녹지띠가 형성되어 있어 구민생활관 부지와 일단을 이루는 형상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사이에 개인건물이 들어설 경우 공공시설의 재산 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A위원)
- 개인 사유토지에 개발행위 허가를 부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종로구에서 매입하여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떠할까?(B위원)
-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민생활관 운영시 각종 소음으로 일반주택이 들어설 경우 오히려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다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많을 것 같음(C위원)
-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본 위치에 개인건물을 지을 경우 주변환경이 저해되어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종로구에서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보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위원장)

바. 검토의견

- 금번 변경건의 집행예산은 불법광고물정비 평가결과 우수구에 지급되는 서울시 인센티브(10억원) 예산 내에서 집행 계획이므로 기존 성립예산의 변경은 초래되지 않음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안 재 흥 위원장, 유 찬 중 위원, 오 필 근 위원, 김 복 동 위원)

(답변자 : 재무국장 동 연 호)

문) 구민생활관이 서울시 소유인데 구태여 자투리 땅을 구에서 매입할 필요가 있는지, 서울시에 매입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답) 구민생활관은 서울시 소유이나 실제적 운영은 우리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우리 구에서 매입시 활용방안은 무엇입니까?

답) 주차공간 확보 및 주변 주민 휴식공간 설치 등으로 활용 방안이 있습니다.

문) 매입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답) 약 2억2,000만원입니다.

문) 원매자는 얼마에 매입을 하였습니까?

답) 3억원입니다.

문)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에는 중·장기재정계획에 미리 반영하여 사전 검토를 해서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답) 앞으로는 그렇게 사전에 계획을 세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4.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結果報告書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10월 4일 ·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1년 10월 4일

다. 상정일자 : 제115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1. 10. 12) 재무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하 철 승)

가. 제안이유

-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7항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안)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공공청사	삼청동 산 2-16일대	2,950	감248.8	2,701.2	'91. 5.28	서울국유림 관리소청사

-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조서

구분	위 치	용도지역		면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종로구 삼청동 158-29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248.8	공공청사 해제지역

3.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안 재 홍 위원장, 오 금 남 위원, 현 수 한 위원, 정 병 환 위원, 김 복 동 위원,
이 형 술 위원)

(답변자: 하 철 승 도시관리국장)

문) 해제하는 지역을 공공청사로 재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답) 공공의 청사로는 활용할 수 없는 부적절한 장소입니다.

문) 공공청사 면적용도를 감소하려는 토지가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 공공청사를 감소하고자 하는 면적은 이미 일반인에게 매각이 되었으므로 공공청사 용도표시는 잘 못된 사항이며, 현재 해제를 한다고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 해제하고자하는 장소가 공지입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문) 공공청사 해제지역의 용도는 일반주거지역입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4. 意見 採 擇 : 없 음

5.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